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36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00,136원 및 그 중 2,396,846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가 2015. 11. 6.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20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손인희

별지